

## 1. 개정이유

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·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“원상회복비용”이라 함)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,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51호, 2025. 9. 16. 공포, 2026. 9. 17. 시행)됨에 따라,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규모 및 행위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기준 및 방법 등(안 제19조의 2)

이행보증금의 적정성 검토 의뢰가 가능한 연구기관 범위 및 보증서, 증권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

나.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(안 제40조의2)

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부과통지서 등 서식 규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##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기준 및 방법 등)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
2.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

② 영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·증권 등(이하 이 조에서 "보증수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점용·사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을 포함할 것
2.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이 이행보증금 이상일 것

3.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시 공유수면관리청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될 것

③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보증수단을 변경 또는 갱신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.

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는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.

② 법 제54조의2제3항 및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.

③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·부과통지서는 「전자정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.

④ 영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41호 서식과 같다.

⑤ 제4항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「전자정부

법」 및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의2 <신설> | <p>제19조의2(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기준 및 방법 등) ① 공유수면 관리청은 영 제24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</p> <p>2.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</p> <p>② 영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·증권 등(이하 이 조에서 "보증수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점용·사용 기간 종료일로부터</p> |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<p><u>1년 이상을 포함할 것</u></p> <p><u>2.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이 이행보증금 이상일 것</u></p> <p><u>3.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시 공유수면관리청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될 것</u></p> <p><u>③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보증수단을 변경 또는 갱신할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재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</u></p> |
| 제40조의2 <신설> | 제40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54조의2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항 및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는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.

② 법 제54조의2제3항 및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.

③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·부과통지서는 「전자정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.

④ 영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41호 서식과 같다.

⑤ 제4항의 이행강제금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「전자정부법」 및 법 제59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(계고서)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|--|
| 담당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 | 처리일자     |  |
| 대상자                | 성명(상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생년월일(성별)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사업자등록번호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원상회복               | 처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처분일자     |  |
| 명령 내용              | 법적 근거 :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처분번호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위반유형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미이행사항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이행하여야 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기산일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   | 월 | 일 부터     |  |
| 만료일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   | 월 | 일 까지     |  |
| 부과의 법적 근거          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2항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부과 예정금액            | 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(W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| 적용기준               | 영 별표4 제1호의 위반유형별 정액 부과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|  |

위 이행기간(만료일)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이 부과예고서에 대해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(공유수면관리청)

직인

### 비고

1. "이행기간"이란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별도로 부여한 기간을 말합니다.
2. 위 이행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시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3.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
##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|
| 담당자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처리일자     |     |
| 대상자       | 성명(상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생년월일(성별) |     |
|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|     |
|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부과금액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(W ) |          |     |
| 부과일자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| 일        |     |
| 납부기한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월     | 일 까지     |     |
| 부과의 법적 근거 |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제1항·제3항<br>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8조의2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부과예고 통지일자 |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부과사유      | 원상회복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명령일자: 년 월 일<br>나. 처분번호:<br>다. 명령내용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시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이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미이행 [ ] 일부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위반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산정내역      | 위반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정액 부과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 별표4에 따른 위반유형별 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만원  |
|           | 최종 부과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 별표4에따른 최종 산정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금 원 |
| 납부안내      | 수납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은행명] 계좌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납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계좌 입금 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 납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| 납부기한 경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「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. |       |          |     |
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불복방법 | 가. 행정심판        |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[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명칭]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나. 행정소송        |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[관할 행정법원] 또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 |
|      | 다.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|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소송은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제1항 단서·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. 귀하의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위반에 대해 제5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명합니다.
2.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시면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됩니다.

년 월 일

(공유수면관리청)

직인

#### 비고

1. "시정기간"이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을 말합니다.
2.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.

210mm×297mm[보존용지(1종) 70g/㎡]

## 이행강제금 관리대장

| 담당자 |             |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최종수정일자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연번  | 성명<br>(법인명) | 주소 | 원상회복 명령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부과예고     |          | 이행강제금 부과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징수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원상회복<br>완료일 | 비고 |
|     |             |    | 명령<br>일자<br>(시정기간) | 명령<br>내용 | 법적<br>근거 | 예고<br>일자 | 의견<br>제출 | 부과<br>일자 | 부과<br>금액<br>(만원) | 납부<br>기한 | 납부<br>일자 | 납부<br>금액<br>(만원) | 체납<br>여부<br>(체납처분내역) |             |    |
|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
(작성요령)

1. 연번: 회계연도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.
2. 성명(법인명):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.
3. 주소: 송달주소(변경시 최신 주소로 갱신)를 적습니다.
4. 원상회복명령: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초 시정명령내용을 기재합니다.
5. 부과예고: 시행령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부과예고서 통지내용을 기재합니다.
6. 의견제출: 제출한 경우 "제출", 미제출시 "미제출"을 기재합니다.
7. 이행강제금 부과: 실제 부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.
8. 징수: 수납 및 체납관리현황을 기재합니다.
9. 원상회복 완료일: 원상회복완료 여부 및 완료일자를 기재합니다.
10. 비고: 반복부과횟수, 행정심판·소송제기 여부, 특이사항 등을 기재합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해양공간정책과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| (051) 773-5266 |